

(유권해석)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.

[국토부 2010. 11. 8. 토지정책과-5243]

#### 질의요지

실시계획인가시 도로부지에 포함되었으나, 사업시행 결과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고 농지로 계속 사용 중인 경우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# 회신내용

해당 토지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불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나,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인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,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